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607)

◇ 제 · 개정 이유

가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전부개정('22.12.1.)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 전기저장시설이 제외되었기에 「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607)」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가. (제9조)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규정을 삭제함